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☐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,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동대문 제4선거구 신복자 의원입니다.
- ☐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- ☐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약칭: 전통시장법)에 따르면 상인회, 상점가진흥조합,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☐ 그러나 상인연합회의 지회인 서울상인연합회는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,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 확보 등 핵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

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.

□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「전통시장법」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역별 지회에 대한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

□ 이에 본 개정안은 위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, 서울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□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